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24서식] <신설 2015.3.13.>

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						
제	ত্					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8조의7제10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.						
				년	월	일
	시장・군수・구청장	· 직인	(담당자:			)
			(연락처:			)

160mm×60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